

#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1,248,748	28,837,462
일반회계	854,563,168	25,636,895
특별회계	106,685,580	3,200,567
공기업특별회계	87,343,786	2,620,31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902,136	957,0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814,381	1,344,43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627,269	318,818
기타특별회계	19,341,794	580,254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8,220	847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745,820	52,375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18,513	78,555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4,777,828	143,335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62,063	70,862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803,000	84,090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5,006,350	150,191

제 2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7회계연도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591,514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201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9,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